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229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농·수협 등 조합원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만희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6. 1. 22.

다. 회 부 일 : 2026. 1.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등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등으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으로 지방소멸화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는 해당 특례가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16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농·수협 등 조합원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농·수협 조합원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제116조) ○ 면제대상 - 농·수협 등 조합원의 금전소비대차 증서(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 1억원 한도)(제1항제5호) ○ 적용기한 - <u>2026년 12월 31일</u>(제2항제3호)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u>2030년 12월 31일</u>(신설) ☐ 부 칙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이만희의원안 2026. 1. 22. 발의(의안번호 16229)

☐ 개정안은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영세 농어민 등 조합원의 생활안정 지원 및 실질적 소득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현행 「인지세법」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¹⁾

1)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는 이에 대한 예외로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농어업 관련 용자 서류 등에 관한 인지세 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농·수협 등 조합원의 용자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과세특례는 1970년 도입되었음. 제도 신설 당시 농어민이 농협 등으로부터 용자 등을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증서에 대하여 동일한 용자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가 면제되었으며, 신협·새마을금고(1975년), 산림조합(1983년),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1990년)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음. 이후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 전부개정에 따라 일몰기한이 설정되었으며, 11차례에 걸쳐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동일한 용자금액 합계액 한도 1억원 이하이며, 면제금액은 기재금액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7만원까지임.

[금전소비대차 증서 인지세 면제한도]

(단위: 백만원)

연 도	1970~ 1978	1979~ 1986	1987~ 1988	1989~ 1995	1996~ 2017	2018~
면제 한도	100	500	1,500	3,000	5,000	10,000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5호에 의해 면제되는 인지세액]

구 분	「인지세법」 제3조제1항		
	증서 기재금액	세액	비 고
· 신협·새마을금고· 농협·수협 등으로 부서의 금전소비대차 (1억원 이하) 관련 증서(제5호)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2만원	* 과세문서로서 기재 금액이 없는 경우 ① 과세문서에 표기된 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계산된 금액 ② 기재금액을 계산 할 수 없을 때: 2만원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4만원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안에 따라 농·수협·신협 등 조합원의 금전소비대차 증서 인지세 면제 특례가 연장될 경우 농·어업인 및 서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소득보전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농·어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약 50~7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 격차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거래 시 발생하는 부수비용인 인지세를 면제하는 것은 농어업인의 세부담을 경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농가·어가 가구당 소득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농 가		어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D)
	소득(A)	비율(A/D)	소득(B)	비율(B/D)	
2020년	45,029	62.2	53,187	73.5	72,362
2021년	47,759	64.1	52,392	70.3	74,507
2022년	46,153	59.1	52,911	67.7	78,113
2023년	50,828	60.5	54,779	65.2	84,054
2024년	50,597	58.5	63,652	73.6	86,464

주: 농가·어가소득은 농업·어업소득 및 비농업·비어업소득을 합한 농가·어가의 총소득을 말하며,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2인 이상 분기별 도시근로자가구소득(명목)의 합산액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농가·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또한, 상호금융기관을 통해 비과세 한도(1억원)을 설정하여 조세지출하는 방식은 조합원으로 가입된 영세한 농어민 등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신흥·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은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저신용층이라는 점에서 인지세 감면 제도는 서민의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동 제도 목적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의 면제 제도”가 선정·평가되었는데, ① 동 조세특례는 농어민의 소득 향상, 서민의 재산 형성과 안정적 생활 도모 측면에서 특례의 정책목적이 적절하게 설정되었고, ②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 등과 신용수준이 낮은 신흥·새마을금고 조합원을 지

원대상으로 하고 소비대차증서 인지세 한도(1억원) 상 고액 자산
농어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③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자산수준이 낮은 수혜대상일수록 동 조세특례를 통한 지
원효과가 커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므로, 동 면제 제도를 일몰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음.

□ 다만,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하여 동 제도의 감면기간을 2026년 말
까지 3년 연장하였는데, 적용기한을 당장 추가로 연장하기보다는 추
후 조세특례의 효과성·타당성에 대한 분석 및 지출규모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트
계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음.²⁾

2) 재정경제부는 제도의 타당성·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세법개정시 적용기한 연장 여부를 검
토할 예정이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4년 연장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47